

(나) 성별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성별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		전 체
		기 재	미기재	
남성	수	5,742	3,434	9,176
	비율	62.6	37.4	100.0
여성	수	438	591	1,029
	비율	42.6	57.4	100.0
전체	수	6,180	4,025	10,205
	비율	60.6	39.4	100.0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은 남성(62.6%)이 여성(42.6%)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 연령

피고인의 연령 분포에 따른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피고인 연령대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여부		전 체
		기 재	미기재	
20세 미만	수	168	40	208
	비율	80.8	19.2	100.0
30세 미만	수	1,082	380	1,462
	비율	74.0	26.0	100.0
40세 미만	수	1,379	870	2,249
	비율	61.3	38.7	100.0
50세 미만	수	1,795	1,353	3,148
	비율	57.0	43.0	100.0

단위 : 명, %

피고인 연령대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여부		전 체
		기 재	미기재	
60세 미만	수	1,280	995	2,275
	비율	56.3	43.7	100.0
70세 미만	수	364	304	668
	비율	54.5	45.5	100.0
70세 이상	수	112	83	195
	비율	57.4	42.6	100.0
전체	수	6,180	4,025	10,205
	비율	60.6	39.4	1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피고인 사건(80.8%)의 경우 명시적 기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세 미만 피고인 사건(54.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살인범죄

가. 개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대상사건은 전체 689건으로, 살인죄는 282건, 살인미수죄는 407건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1. 4. 15.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이 있었기에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과 2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나. 분포현황

(1) 신고내역

살인범죄 해당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전체사건에 대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살인	제1유형	수	0	6	-	6	
		비율	0.0	100.0	-	100.0	
	제2유형	수	1	125	-	126	
		비율	0.8	99.2	-	100.0	
	제3유형	수	3	8	-	11	
		비율	27.3	72.7	-	100.0	
	전체	수	4	139	-	143	
		비율	2.8	97.2	-	100.0	
	살인미수	제1유형	수	-	0	2	2
			비율	-	0.0	100.0	100.0
제2유형		수	-	106	67	173	
		비율	-	61.3	38.7	100.0	
제3유형		수	-	2	0	2	
		비율	-	100.0	0.0	100.0	
전체		수	-	108	69	177	
		비율	-	61.0	39.0	100.0	

살인죄의 경우는 무기징역 4건, 실형 139건으로 집행유예는 나타나지 않았고, 살인미수죄의 경우는 실형(61.0%)의 비율이 집행유예(3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2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살인	제1유형	수	0	5	1	6
		비율	0.0	83.3	16.7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제2유형	수	1	109	0	110
		비율	0.9	99.1	0.0	100.0
	제3유형	수	1	11	0	12
		비율	8.3	91.7	0.0	100.0
	제4유형	수	4	7	0	11
		비율	36.4	63.6	0.0	100.0
전체	수	6	132	1	139	
	비율	4.3	95.0	0.7	100.0	
살인미수	제1유형	수	-	0	2	2
		비율	-	0.0	100.0	100.0
	제2유형	수	-	121	88	209
		비율	-	57.9	42.1	100.0
	제3유형	수	-	6	0	6
		비율	-	100.0	0.0	100.0
	제4유형	수	-	12	0	12
		비율	-	100.0	0.0	100.0
	제5유형	수	-	1	0	1
		비율	-	100.0	0.0	100.0
	전체	수	-	140	90	230
		비율	-	60.9	39.1	100.0

살인죄의 경우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실형 이상이었으며, 무기징역의 비율은 4.3%로 나타났으며, 살인미수는 실형(60.9%)이 집행유예(39.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살인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살인죄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렸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흥기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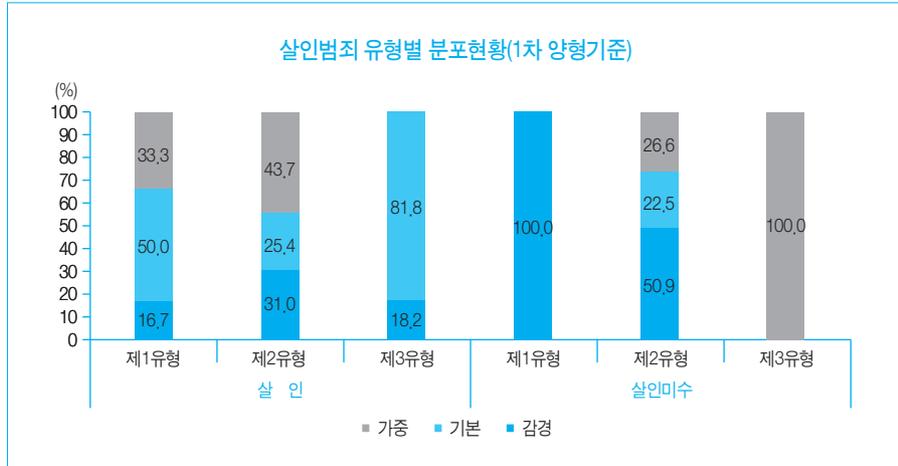
살인죄의 경우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과 2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을 구분하여 유형 및 영역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아래 표와 그림은 살인범죄 해당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살인	제1유형	수	1	3	2	6	
		비율	16.7	50.0	33.3	100.0	
	제2유형	수	39	32	55	126	
		비율	31.0	25.4	43.7	100.0	
	제3유형	수	0	2	9	11	
		비율	0.0	18.2	81.8	100.0	
	전체	수	40	37	66	143	
		비율	28.0	25.9	46.2	100.0	
	살인미수	제1유형	수	2	0	0	2
			비율	100.0	0.0	0.0	100.0
제2유형		수	88	39	46	173	
		비율	50.9	22.5	26.6	100.0	
제3유형		수	0	0	2	2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90	39	48	177	
		비율	50.8	22.0	27.1	100.0	



살인죄의 경우에는 가중영역(46.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경영역(28.0%), 기본영역(25.9%)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살인미수죄는 감경영역(50.8%) > 가중영역(27.1%) > 기본영역(22.0%) 순으로 나타났다.

(나) 2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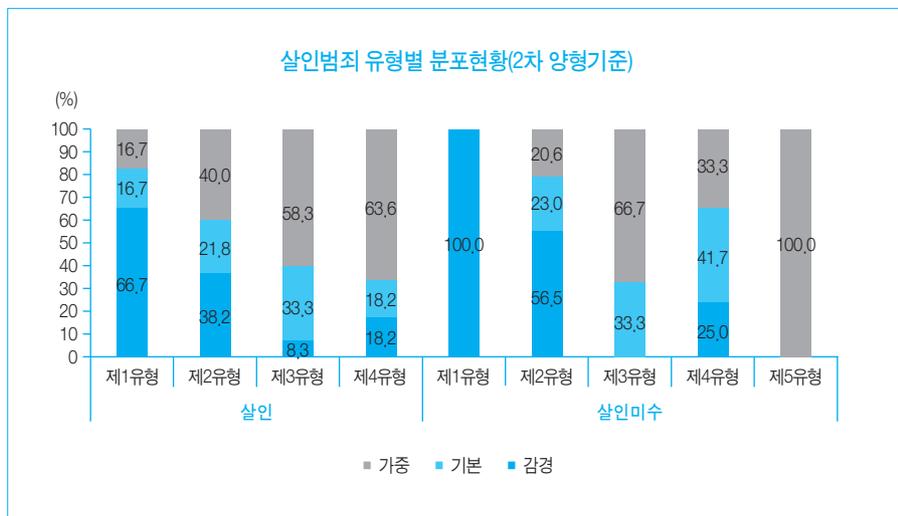
아래 표와 그림은 살인범죄 해당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단위 :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살인	제1유형	수	4	1	1	6
		비율	66.7	16.7	16.7	100.0
	제2유형	수	42	24	44	110
		비율	38.2	21.8	40.0	100.0
	제3유형	수	1	4	7	12
		비율	8.3	33.3	58.3	100.0
	제4유형	수	2	2	7	11
		비율	18.2	18.2	63.6	100.0
	전체	수	49	31	59	139
		비율	35.3	22.3	42.4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살인미수	제1유형	수	2	0	0	2
		비율	100.0	0.0	0.0	100.0
	제2유형	수	118	48	43	209
		비율	56.5	23.0	20.6	100.0
	제3유형	수	0	2	4	6
		비율	0.0	33.3	66.7	100.0
	제4유형	수	3	5	4	12
		비율	25.0	41.7	33.3	100.0
	제5유형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123	55	52	230
		비율	53.5	23.9	22.6	100.0



살인죄는 가중영역(42.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경영역(35.3%), 기본영역(22.3%)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으며, 유형이 높아질수록 가중영역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죄는 감경영역(53.5%) > 기본영역(23.9%) > 가중영역(22.6%) 순으로 나타났다.

다. 양형기준 대상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09년부터 연도별 대상사건의 평균형량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가) 전체사건

아래 표는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이전의 대상사건 전체에 대한 평균형량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단위 : 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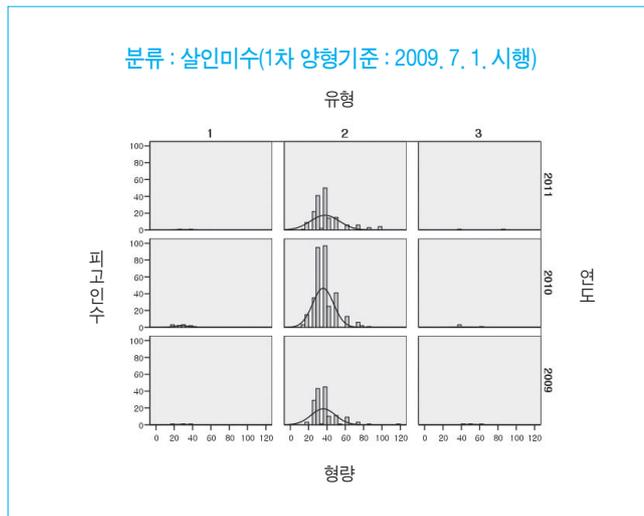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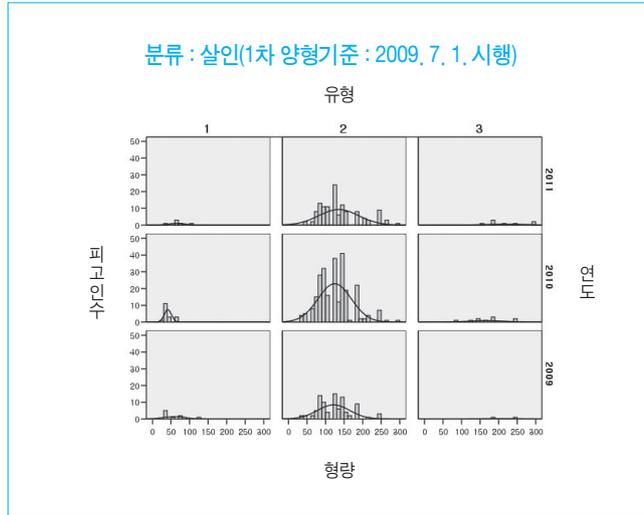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살인	제1 유형	감경	5	-	2,9000	0,2236	10	-	3,1833	0,5119	1	-	5,0000	-
		기본	3	-	5,5000	0,8660	4	-	3,5000	1,0000	3	-	5,6667	3,0551
		가중	2	-	8,5000	2,1213	4	-	4,0000	1,1547	2	-	5,5000	0,7071
		합계	10	-	4,8000	2,429	18	-	3,4352	0,8148	6	-	5,5000	1,9748
	제2 유형	감경	33	-	6,9242	2,1254	89	-	7,2135	2,0942	39	-	7,5641	1,8750
		기본	20	-	9,7000	1,7800	73	(무-1)	10,3813	2,3236	32	-	9,7813	2,3927
		가중	39	(무-2)	13,0513	2,8924	96	(무-14)	13,2813	3,4442	54	(무-1)	14,8611	4,0404
		합계	92	(무-2)	10,125	3,6288	258	(무-15)	10,3676	3,7437	125	(무-1)	11,284	4,4714
	제3 유형	감경	-	-	-	-	1	(무-1)	7,0000	.	-	-	-	-
		기본	-	-	-	-	2	-	12,5000	3,5355	2	-	14	1,4142
		가중	2	(무-3)	17,5000	3,5355	7	(무-11)	15,4286	3,3594	6	(무-3)	19,6667	4,5461
		합계	2	(무-3)	17,5000	3,5355	10	(무-12)	14,0000	4,0552	8	(무-3)	18,25	4,6828
	합계	감경	38	-	6,3947	2,411	100	(무-1)	6,8083	2,3233	40	-	7,5000	1,8947
		기본	23	-	9,1522	2,2127	79	(무-1)	10,0865	2,7637	37	-	9,6757	2,8093
		가중	43	(무-5)	13,0465	3,1468	107	(무-25)	13,0748	3,8497	62	(무-4)	15,0242	4,583
		합계	104	(무-5)	9,7548	3,9927	286	(무-27)	10,0583	4,0743	139	(무-4)	11,4353	4,8439
살인 미수	제1 유형	감경	2	-	2,0000	0,7071	4	-	2,0000	0,7071	2	-	2,5000	0,7071
		기본	1	-	3,0000	.	3	-	2,4444	0,5092	-	-	-	-
		가중	-	-	-	-	4	-	2,5000	0,8165	-	-	-	-
		합계	3	-	2,3333	0,7638	11	-	2,3030	0,6783	2	-	2,5000	0,7071

단위 : 명, 년

사건 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사형/ 무기	평균	표준 편차	수	사형/ 무기	평균	표준 편차	수	사형/ 무기	평균	표준 편차
	제2 유형	감경	78	-	2,4017	0,4006	188	-	2,4801	0,5891	88	-	2,5057	0,5847
		기본	36	-	3,0185	0,5589	69	-	3,1570	0,4111	39	-	2,9509	1,0380
		가중	43	-	4,0814	1,4513	76	-	4,0768	1,0557	46	-	4,5435	1,4788
		합계	157	-	3,0032	1,1035	333	-	2,9847	0,9514	173	-	3,1479	1,3130
	제3 유형	감경	-	-	-	-	4	-	3,5000	1,0000	-	-	-	-
		기본	2	-	4,2500	1,0607	-	-	-	-	-	-	-	-
		가중	1	-	4,0000	.	-	(무-1)	-	-	2	-	5,0000	2,8284
		합계	3	-	4,1667	0,7638	4	(무-1)	3,5	1,0000	2	-	5,0000	2,8284
	합계	감경	80	-	2,3917	0,4083	196	-	2,4911	0,6180	90	-	2,5056	0,5830
		기본	39	-	3,0812	0,6270	72	-	3,1273	0,4356	39	-	2,9509	1,0380
		가중	44	-	4,0795	1,4344	80	(무-1)	3,9979	1,0968	48	-	4,5625	1,5075
		합계	163	-	3,0123	1,1047	348	(무-1)	2,9691	0,9516	177	-	3,1615	1,3329

※ (무)무기징역 사건수, (사)사형 사건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에서는 제외됨.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모두 전체 유형에서 2011년도 평균형량이 2010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죄명에 대한 유형별 형량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다.



(나) 단일범(일죄) 사건

위의 내용은 양형기준 대상사건의 전체(일죄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합범으로 인하여 형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편차가 커지는 등 결과를 제거하고자 단일범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여 보았다(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같다).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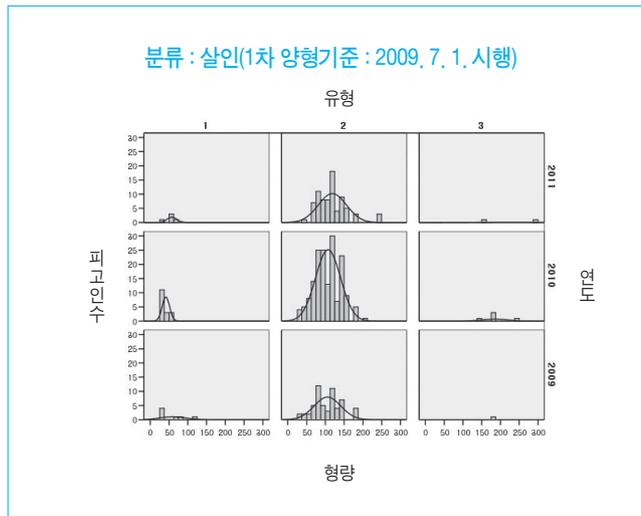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살인	제1 유형	감경	4	-	3	0,0000	10	-	3,1833	0,5119	1	-	5,0000	-
		기본	1	-	6	-	3	-	3,6667	1,1547	2	-	4,0000	1,4142
		가중	2	-	8,5	2,1213	4	-	4,0000	1,1547	2	-	5,5000	0,7071
		합계	7	-	5	2,7689	17	-	3,4608	0,8324	5	-	4,8000	1,0954
	제2 유형	감경	28	-	6,625	2,0441	71	-	6,7113	1,7762	29	-	7,5517	1,7846
		기본	11	-	9,5455	1,1282	48	-	9,5208	1,5977	21	-	9,4286	1,1212
		가중	18	-	11,7222	2,1367	50	(무-1)	11,4800	2,3818	27	-	12,7407	3,0958
		합계	57	-	8,7982	2,9744	169	(무-1)	8,9201	2,7926	77	-	9,8831	3,1329
	제3 유형	감경	-	-	-	-	-	-	-	-	-	-	-	-
		기본	-	-	-	-	1	-	15	-	1	-	13,0000	-
		가중	1	-	15	-	4	(무-2)	15,5000	3,3166	1	(무-1)	25,0000	-
		합계	1	-	15	-	5	(무-2)	15,4000	2,8810	2	(무-1)	19,0000	8,4853
	합계	감경	32	-	6,1719	2,2633	81	-	6,2757	2,0380	30	-	7,4667	1,8144
		기본	12	-	9,25	1,4848	52	-	9,2885	2,2258	24	-	9,1250	2,0497
		가중	21	-	11,5714	2,3785	58	(무-3)	11,2414	3,2448	30	(무-1)	12,6667	4,1716
		합계	65	-	8,4846	3,2464	191	(무-3)	8,6038	3,2863	84	(무-1)	9,7976	3,6694
살인미수	제1 유형	기본	1	-	3	-	3	-	2,4444	0,5092	2	-	2,5000	0,7071
		감경	1	-	2,5	-	2	-	1,7500	0,3536	-	-	-	-
		가중	-	-	-	-	4	-	2,5000	0,8165	-	-	-	-
		합계	2	-	2,75	0,3536	9	-	2,3148	0,6585	2	-	2,5000	0,7071
	제2 유형	감경	54	-	2,3519	0,4078	148	-	2,4386	0,5531	72	-	2,4306	0,5056
		기본	24	-	2,8542	0,3451	51	-	3,0980	0,3320	33	-	2,7449	0,4886
		가중	27	-	3,7407	1,0412	54	-	4,1080	1,0937	26	-	3,9615	0,9992
		합계	105	-	2,8238	0,8463	253	-	2,9279	0,9470	131	-	2,8136	0,8581
	제3 유형	감경	-	-	-	-	2	-	3,0000	0,0000	-	-	-	-
		기본	-	-	-	-	-	-	-	-	-	-	-	-
		가중	1	-	4	-	-	-	-	-	1	-	3,0000	-
		합계	1	-	4	-	2	-	3,0000	0,0000	1	-	3,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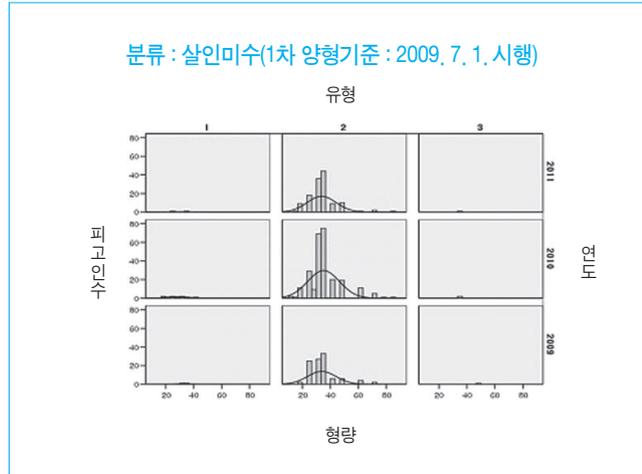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합계	감경	55	-	2,3545	0,4045	152	-	2,4370	0,5560	74	-	2,4324	0,5056
		기본	25	-	2,8600	0,3391	54	-	3,0617	0,3696	33	-	2,7449	0,4886
		가중	28	-	3,7500	1,0229	58	-	3,9971	1,1473	27	-	3,9259	0,9971
		합계	108	-	2,8333	0,8428	264	-	2,9075	0,9407	134	-	2,8103	0,8516

※ (무)무기징역 사건수, (사)사형 사건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에서는 제외됨.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모두 거의 대부분 유형에서 2011년도 평균형량이 2010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죄명에 대한 유형별 형량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어 보았다.





(2) 2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가) 전체사건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살인	제1유형	감경	4	-	3,8750	0,8539
		기본	1	-	5,0000	-
		가중	1	-	5,0000	-
		합계	6	-	4,2500	0,8803
	제2유형	감경	42	-	7,9881	3,8580
		기본	24	-	11,2708	1,8473
		가중	43	(무-1)	15,4651	4,5844
		합계	109	(무-1)	11,6606	5,0589
	제3유형	감경	1	-	15,0000	-
		기본	4	-	17,2500	3,7749
		가중	6	(무-1)	27,5000	6,1237
		합계	11	(무-1)	22,6364	7,3929
	제4유형	감경	2	-	15,5000	0,7071
		기본	2	-	20,0000	0,0000
		가중	3	(무-4)	21,6667	2,8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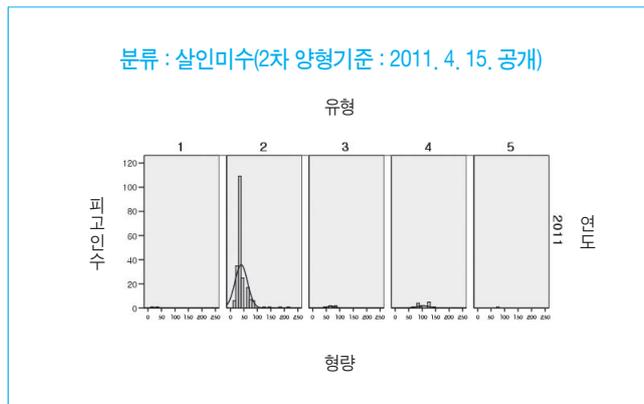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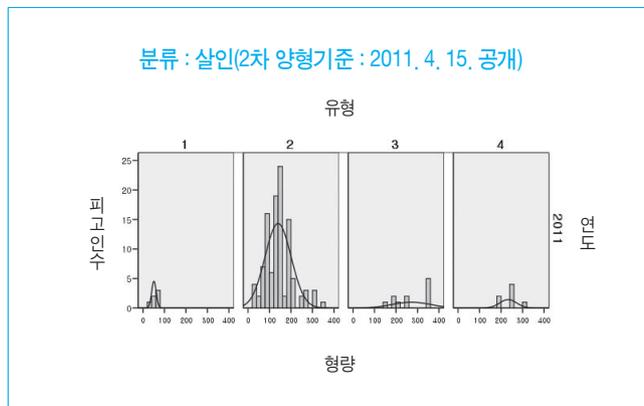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 형	영 역	수	사형/무기	평 균	표준편차
	합 계	합계	7	(무-4)	19,4286	3,2587
		감경	49	-	8,1020	4,1883
		기본	31	-	12,4032	3,7247
		가중	53	(무-6)	16,9811	6,2925
		합계	133	(무-6)	12,6429	6,3525
살인미수	제1유형	감경	2	-	2,1250	1,2374
		기본	-	-	-	-
		가중	-	-	-	-
		합계	2	-	2,1250	1,2374
	제2유형	감경	118	-	2,5127	0,5855
		기본	48	-	3,2188	0,7502
		가중	43	-	5,7907	2,9885
		합계	209	-	3,3493	1,9382
	제3유형	감경	-	-	-	-
		기본	2	-	4,5000	0,7071
		가중	4	-	6,2500	0,9574
		합계	6	-	5,6667	1,2111
	제4유형	감경	3	-	7,3333	2,5166
		기본	5	-	9,8000	1,7889
		가중	4	-	8,0000	1,4142
		합계	12	-	8,5833	2,0207
	제5유형	감경	-	-	-	-
		기본	-	-	-	-
		가중	1	-	6,0000	-
		합계	1	-	6,0000	-
합 계	감경	123	-	2,6240	1,0033	
	기본	55	-	3,8636	2,0938	
	가중	52	-	6,0000	2,8076	
	합계	230	-	3,6837	2,2704	

※ (무)무기징역 사건수, (사)사형 사건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에서는 제외됨.

양형기준 수정 이전과 전체 평균형량을 비교하여 보면, 살인죄의 경우 양형기준 수정 이후(12.6429년)가 이전(11.4353년)에 비해서 평균형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살인미수죄의 경우도 수정 이후(3.6837년)가 이전(3.1615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서 양형기준 수정 후의 평균형량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세부죄명에 대한 유형별 형량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어 보았다.



(나) 단일범 사건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살인	제1유형	감경	3	-	4,0000	1,0000
		기본	1	-	5,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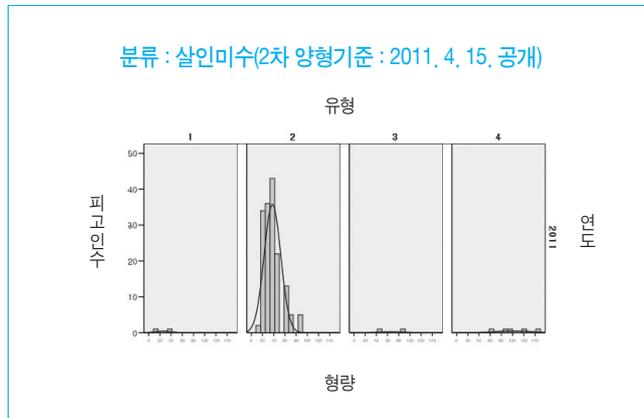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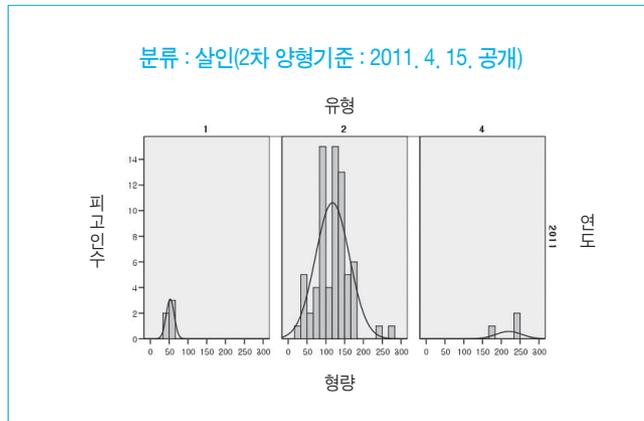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가중	1	-	5,0000	-	
		합계	5	-	4,4000	0,8944	
	제2유형	감경	36	-	7,2639	2,5898	
		기본	17	-	10,8529	1,7479	
		가중	19	-	13,6842	3,1807	
		합계	72	-	9,8056	3,7581	
		제4유형	감경	1	-	15,0000	-
	기본		1	-	20,0000	-	
	가중		1	-	20,0000	-	
	합계		3	-	18,3333	2,8868	
	합계	감경	40	-	7,2125	2,9020	
		기본	19	-	11,0263	3,0390	
		가중	21	-	13,5714	3,8545	
		합계	80	-	9,7875	4,1899	
	살인미수	제1유형	감경	2	-	2,1250	1,2374
			기본	-	-	-	-
가중			-	-	-	-	
합계			2	-	2,1250	1,2374	
제2유형		감경	86	-	2,4419	0,5799	
		기본	42	-	3,1667	0,6687	
		가중	32	-	4,9688	1,2568	
		합계	160	-	3,1375	1,2409	
제3유형		감경	-	-	-	-	
		기본	1	-	4,0000	-	
		가중	1	-	7,0000	-	
		합계	2	-	5,5000	2,1213	
제4유형		감경	1	-	5,0000	-	
		기본	1	-	12,0000	-	
		가중	3	-	8,3333	1,5275	
		합계	5	-	8,4000	2,7019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수	사형/무기	평균	표준편차
	합계	감경	89	-	2,4635	0,6468
		기본	44	-	3,3864	1,4858
		가중	36	-	5,3056	1,5824
		합계	169	-	3,3092	1,5939

세부죄명에 대한 유형별 형량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어 보았다.



4 뇌물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뇌물범죄 해당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600건의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뇌물수수	제1유형	수	17	100	117
		비율	14.5	85.5	100.0
	제2유형	수	39	73	112
		비율	34.8	65.2	100.0
	제3유형	수	31	7	38
		비율	81.6	18.4	100.0
	제4유형	수	33	0	33
		비율	100.0	0.0	100.0
	제5유형	수	25	0	25
		비율	100.0	0.0	100.0
	제6유형	수	8	0	8
		비율	100.0	0.0	100.0
	전 체	수	153	180	333
		비율	45.9	54.1	100.0
뇌물공여	제1유형	수	39	125	164
		비율	23.8	76.2	100.0
	제2유형	수	7	23	30
		비율	23.3	76.7	100.0
	제3유형	수	11	20	31
		비율	35.5	64.5	100.0
	제4유형	수	16	26	42
		비율	38.1	61.9	100.0
	전 체	수	73	194	267
		비율	27.3	72.7	100.0

뇌물수수죄는 전체 333건 중 유기실형의 선고가 153건(45.9), 집행유예가 180건(54.1%)이었고, 뇌물공여죄는 전체 267건 중 유기실형 73건(27.3%), 집행유예가 194건(72.7%)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죄의 경우 제4유형 이상에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뇌물공여의 경우도 유형이 높아질수록 실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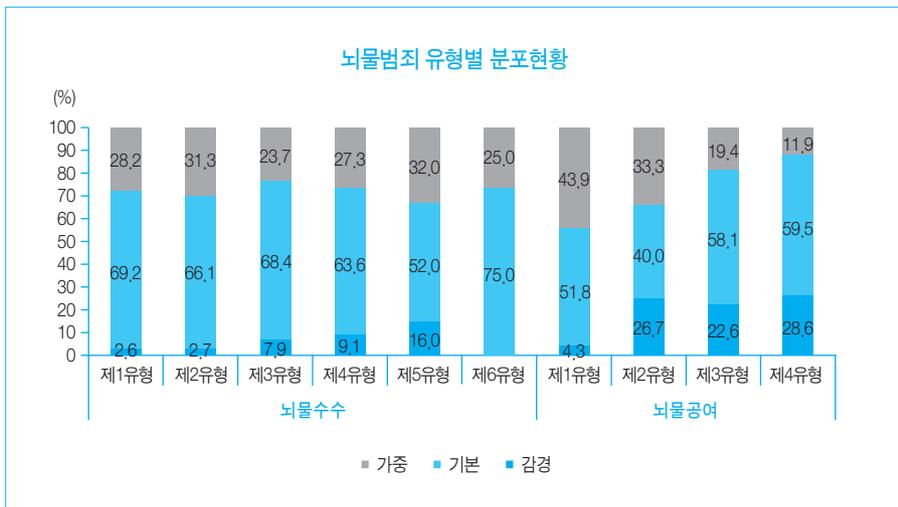
아래 표와 그림은 뇌물범죄 해당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뇌물수수	제1유형	수	3	81	33	117
		비율	2.6	69.2	28.2	100.0
	제2유형	수	3	74	35	112
		비율	2.7	66.1	31.3	100.0
	제3유형	수	3	26	9	38
		비율	7.9	68.4	23.7	100.0
	제4유형	수	3	21	9	33
		비율	9.1	63.6	27.3	100.0
	제5유형	수	4	13	8	25
		비율	16.0	52.0	32.0	100.0
	제6유형	수	0	6	2	8
		비율	0.0	75.0	25.0	100.0
	전 체	수	16	221	96	333
		비율	4.8	66.4	28.8	100.0
뇌물공여	제1유형	수	7	85	72	164
		비율	4.3	51.8	43.9	100.0
	제2유형	수	8	12	10	30
		비율	26.7	40.0	33.3	100.0
	제3유형	수	7	18	6	31
		비율	22.6	58.1	19.4	100.0
	제4유형	수	12	25	5	42
		비율	28.6	59.5	11.9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전 체		수	34	140	93	267
		비율	12.7	52.4	34.8	100.0



뇌물수수죄는 영역별 비율은 기본영역(66.4%) > 가중영역(28.8%) > 감경영역(4.8%)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물공여죄는 기본영역(52.4%) > 가중영역(34.8%) > 감경영역(12.7%) 순으로 나타났다.

나. 양형기준 대상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09년부터 연도별 평균형량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 전체사건

아래 표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의 뇌물범죄의 평균형량과 2011년도 평균형량을 비교한 것으로 뇌물수수죄의 경우 제6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매년 평균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제1유형과 제4유형은 2011년도가 이전에 비해서 평균형량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평균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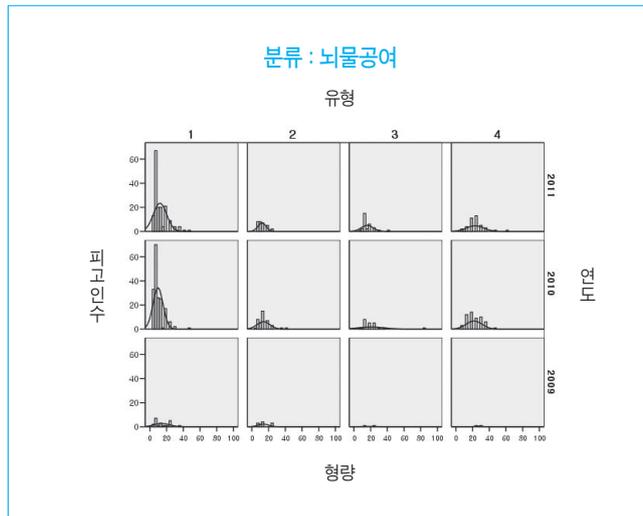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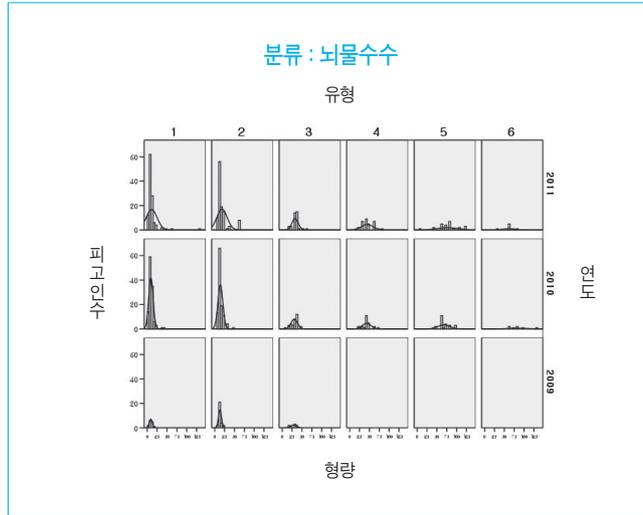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뇌물 수수	제1 유형	감경	-	-	-	4	0.5000	0.0000	3	0.9444	0.9179
		기본	12	0.7222	0.3433	77	0.7359	0.5154	81	0.6728	0.5568
		가중	2	0.9167	0.1179	38	0.8904	0.3880	33	1.5202	1.8772
		합계	14	0.7500	0.3252	119	0.7773	0.4755	117	0.9188	1.1600
	제2 유형	감경	-	-	-	6	0.7778	0.1361	3	1.1667	0.2887
		기본	26	1.0962	0.2835	75	1.1733	0.5323	74	1.1408	0.4222
		가중	3	1.2222	0.6939	33	1.3283	0.5212	35	2.3905	1.5419
		합계	29	1.1092	0.3282	114	1.1974	0.5273	112	1.5320	1.0886
	제3 유형	감경	1	2.5000	-	4	2.3333	0.6236	3	2.5000	0.0000
		기본	6	2.2500	0.6892	18	2.5833	0.5948	26	2.6731	0.7063
		가중	1	2.5000	-	11	2.5758	0.8640	9	2.9444	0.6821
		합계	8	2.3125	0.5939	33	2.5505	0.6815	38	2.7237	0.6748
	제4 유형	감경	-	-	-	2	3.7500	0.3536	3	3.1667	1.0408
		기본	-	-	-	16	3.8125	0.8539	21	3.4762	1.2597
		가중	-	-	-	7	2.9048	0.9019	9	4.4444	1.0442
		합계	-	-	-	25	3.5533	0.9138	33	3.7121	1.2439
	제5 유형	감경	-	-	-	1	5.0000	-	4	5.1250	1.4361
		기본	-	-	-	16	5.5000	1.2517	13	5.6538	1.9406
		가중	-	-	-	8	6.0000	1.3093	8	8.3750	1.7678
		합계	-	-	-	25	3.5533	0.9138	25	6.4400	2.2189
	제6 유형	감경	-	-	-	1	5.0000	-	-	-	-
		기본	-	-	-	5	6.6000	1.1402	6	4.9167	1.4289
		가중	-	-	-	1	11.0000	-	2	5.5000	0.7071
		합계	-	-	-	7	7.0000	2.0817	8	5.0625	1.2660
	합계	감경	1	2.5000	-	18	1.8611	1.6009	16	2.7396	1.8399
		기본	44	1.1515	0.5948	207	1.8027	1.7258	221	1.7394	1.6540
		가중	6	1.3333	0.7379	98	1.8912	1.8092	96	2.8993	2.4605
		합계	51	1.1993	0.6298	323	1.8328	1.7402	333	2.1219	1.9972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뇌물 공여	제1 유형	감경	1	0,3333	-	5	0,5333	0,0745	7	0,6429	0,4131
		기본	16	1,3333	0,7528	97	0,7938	0,5612	85	0,8971	0,5977
		가중	5	0,8333	0,6562	79	0,8470	0,4358	72	1,1701	0,7276
		합계	22	1,1742	0,7533	181	0,8099	0,5033	164	1,0061	0,6669
	제2 유형	감경	-	-	-	2	0,7500	0,1179	8	0,8125	0,3266
		기본	10	1,0667	0,5104	20	1,2167	0,7630	12	1,0278	0,4134
		가중	2	1,5000	0,7071	19	1,1228	0,5147	10	1,1167	0,4378
		합계	12	1,1389	0,5358	41	1,1504	0,6377	30	1,0000	0,4059
	제3 유형	감경	-	-	-	5	1,1000	0,2236	7	1,0476	0,2089
		기본	1	1,0000	-	10	1,7417	1,8907	18	1,2500	0,4618
		가중	1	2,0000	-	8	2,0625	0,4955	6	1,8333	0,9309
		합계	2	1,5000	0,7071	23	1,7138	1,2961	31	1,3172	0,5890
	제4 유형	감경	-	-	-	9	1,7222	1,0035	12	2,0000	0,4264
		기본	2	2,2500	0,3536	33	1,9091	0,8240	25	1,6400	0,7648
		가중	-	-	-	13	1,6154	0,4160	5	3,0000	1,2247
		합계	2	2,2500	0,3536	55	1,8091	0,7787	42	1,9048	0,8539
	합계	감경	1	0,3333	-	21	1,1984	0,8192	34	1,2451	0,6782
		기본	29	1,2931	0,6924	160	1,1359	0,9045	140	1,0863	0,6613
		가중	8	1,1458	0,7261	119	1,0567	0,5755	93	1,3056	0,8556
		합계	38	1,2368	0,6992	300	1,1089	0,7827	267	1,1829	0,7412

위의 유형별 사건들의 형량분포를 알아보고자 아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2) 단일범 사건

위의 내용은 양형기준 대상사건 전체(일죄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를 대상으로 하여 평균형량을 나타낸 것으로 아래에서는 경합범으로 인하여 형량이 올라가는 등 통계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일범만의 평균형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단일범(일죄범) 사건에 대한 연도별 평균형량을 나타내었다.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뇌물 수수	제1 유형	감경	-	-	-	4	0.5000	0.0000	1	0.5000	-
		기본	8	0.6250	0.3753	35	0.5429	0.1683	32	0.5677	0.1838
		가중	1	1.0000	-	13	0.8590	0.2954	11	1.1667	0.8097
		합계	9	0.6667	0.3727	52	0.6186	0.2433	44	0.7159	0.4962
	제2 유형	감경	-	-	-	4	0.8333	0.1361	1	1.0000	-
		기본	16	1.0417	0.1972	32	1.0729	0.3166	38	1.1031	0.3308
		가중	1	0.6667	-	8	1.3750	0.5175	11	1.5606	0.6636
		합계	17	1.0196	0.2115	44	1.1061	0.3720	50	1.2017	0.4580
	제3 유형	감경	1	2.5000	-	2	2.4167	0.1179	2	2.5000	0.0000
		기본	3	2.8333	0.2887	13	2.7564	0.2774	14	2.7500	0.2594
		가중	1	2.5000	-	3	3.1111	0.8389	2	2.2500	0.3536
		합계	5	2.7000	0.2739	18	2.7778	0.4162	18	2.6667	0.2970
	제4 유형	감경	-	-	-	1	3.5000	-	1	3.5000	-
		기본	-	-	-	5	3.6000	0.2236	6	4.0833	0.7360
		가중	-	-	-	1	4.0000	-	1	6.0000	-
		합계	-	-	-	7	3.6429	0.2440	8	4.2500	0.9636
	제5 유형	감경	-	-	-	-	-	-	1	5.0000	-
		기본	-	-	-	5	5.5000	0.5000	6	5.3333	2.6013
		가중	-	-	-	3	5.3333	0.5774	1	10.0000	-
		합계	-	-	-	8	5.4375	0.4955	8	5.8750	2.7613
제6 유형	감경	-	-	-	-	-	-	-	-	-	
	기본	-	-	-	1	5.0000	-	1	5.0000	-	
	가중	-	-	-	-	-	-	2	5.5000	0.7071	
	합계	-	-	-	1	5.0000	-	3	5.3333	0.5774	
합계	감경	1	2.5000	-	11	1.2424	1.0391	6	2.5000	1.6432	
	기본	27	1.1173	0.6962	91	1.5348	1.4095	97	1.6503	1.5694	
	가중	3	1.3889	0.9766	28	1.8393	1.5559	28	2.1964	2.1507	
	합계	31	1.1882	0.7413	130	1.5756	1.4150	131	1.8060	1.7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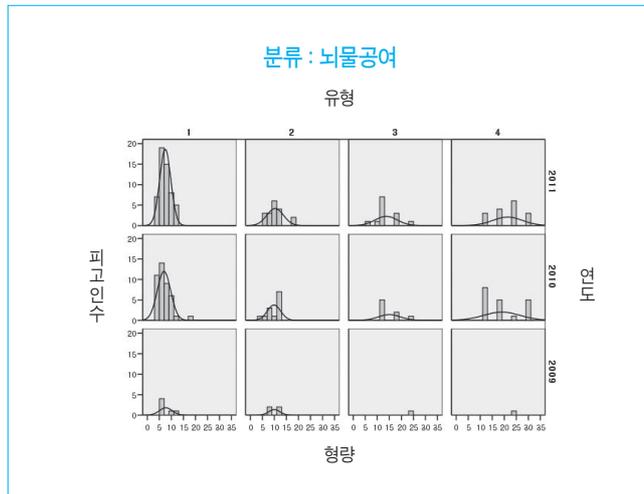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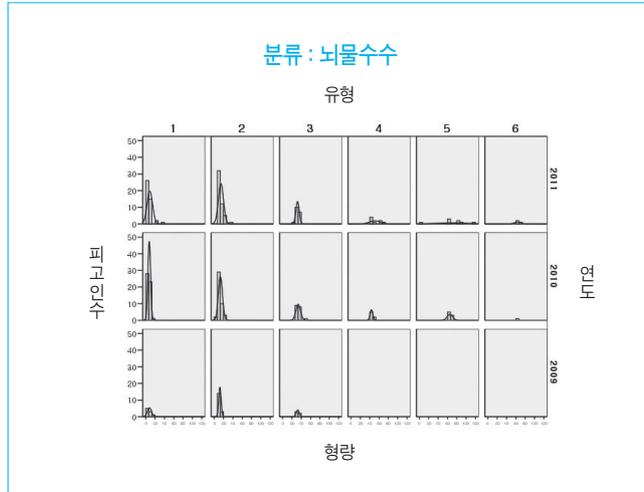
단위 : 명, 년

사건명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뇌물 공여	제1 유형	감경	-	-	-	2	0,5000	0,0000	3	0,5000	0,2887
		기본	3	0,7778	0,2546	25	0,4933	0,1316	27	0,6173	0,2159
		가중	3	0,5000	0,0000	15	0,7222	0,3065	24	0,6389	0,1528
		합계	6	0,6389	0,2215	42	0,5754	0,2334	54	0,6204	0,1927
	제2 유형	감경	-	-	-	1	0,6667	-	5	0,7333	0,2236
		기본	3	0,7778	0,1925	7	0,8809	0,2493	7	0,8810	0,2841
		가중	1	1,0000	-	5	0,7667	0,2236	6	0,9444	0,3443
		합계	4	0,8333	0,1925	13	0,8205	0,2304	18	0,8611	0,2873
	제3 유형	감경	-	-	-	4	1,0000	0,0000	4	1,0833	0,2887
		기본	-	-	-	3	1,5000	0,5000	5	1,0000	0,3536
		가중	1	2,0000	-	1	1,5000	-	4	1,3750	0,4787
		합계	1	2,0000	-	8	1,2500	0,3780	13	1,1410	0,3840
	제4 유형	감경	-	-	-	4	1,3750	0,7500	6	1,9167	0,2041
		기본	1	2,0000	-	13	1,7308	0,5991	10	1,7000	0,6325
		가중	-	-	-	2	1,0000	0,0000	-	-	-
		합계	1	2,0000	-	19	1,5789	0,6294	16	1,7813	0,5154
	합계	감경	-	-	-	11	1,0152	0,5347	18	1,1667	0,6183
		기본	7	0,9524	0,4973	48	0,9479	0,6470	49	0,9150	0,5476
		가중	5	0,9000	0,6519	23	0,7899	0,3147	34	0,7794	0,3426
		합계	12	0,9306	0,5387	82	0,9126	0,5582	101	0,9142	0,5151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2011년도가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제3유형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은 2011년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건의 수가 많지 않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제1유형, 제2유형, 제4유형은 2011년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제3유형은 2010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에 대한 형량분포 형태를 알아보고자 아래의 히스토그램을 보였다.



5 성범죄

가. 분포현황

성범죄는 제1기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성폭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0. 7. 15. 1차로 수정되었으며, 이후 유기징역형 상한을 높인 형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 4. 15. 2차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기준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차(2009. 7. 1. 시행), 2차(2010. 7. 15. 공개), 3차(2011. 4. 15. 공

개) 양형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선고내역

성범죄와 강도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기 때문에 일반사건과 구분하여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가) 일반사건(특강누범 사건 제외)

①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1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강간	제1유형	수	6	3	9
		비율	66.7	33.3	100.0
	제2유형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제3유형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8	3	11	
비율	72.7	27.3	100.0		
강제추행	제1유형	수	8	7	15
		비율	53.3	46.7	100.0
	전체	수	8	7	15
		비율	53.3	46.7	100.0
13세 미만	제1유형	수	2	0	2
		비율	100.0	0.0	100.0
	제2유형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3	0	3
		비율	100.0	0.0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강간(상해)	제2유형	수	6	0	6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6	0	6
		비율	100.0	0.0	100.0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전체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강간죄의 경우 실형(72.7%)이 집행유예(27.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도 실형(53.3%)이 집행유예(46.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13세 미만 성범죄와 상해가 발생한 강간죄의 경우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고, 상해가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이 같았다.

② 2차 양형기준(2010. 7. 15. 공개)

2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강간	제1유형	수	0	48	10	58
		비율	0.0	82.8	17.2	100.0
	제2유형	수	0	149	95	244
		비율	0.0	61.1	38.9	100.0
	제3유형	수	1	27	0	28
		비율	3.6	96.4	0.0	100.0
	전 체	수	1	224	105	330
		비율	0.3	67.9	31.8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제1유형	수	-	71	80	151
		비율	-	47.0	53.0	100.0
	제2유형	수	-	71	186	257
		비율	-	27.6	72.4	100.0
	제3유형	수	-	4	0	4
		비율	-	100.0	0.0	100.0
전 체	수	-	146	266	412	
비율	-	-	35.4	64.6	100.0	
13세 미만	제1유형	수	-	4	11	15
		비율	-	26.7	73.3	100.0
	제2유형	수	-	58	102	160
		비율	-	36.3	63.8	100.0
	제3유형	수	-	9	1	10
		비율	-	90.0	10.0	100.0
전 체	수	-	116	116	232	
비율	-	-	50.0	50.0	100.0	
강간(상해)	제2유형	수	-	92	103	195
		비율	-	47.2	52.8	100.0
	제3유형	수	-	51	15	66
		비율	-	77.3	22.7	100.0
전 체	수	-	143	118	261	
비율	-	-	54.8	45.2	100.0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	19	56	75
		비율	-	25.3	74.7	100.0
	제2유형	수	-	3	2	5
		비율	-	60.0	40.0	100.0
전 체	수	-	22	58	80	
비율	-	-	27.5	72.5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무기징역	실 형	집행유예	
13세 미만(상해)	제1유형	수	-	1	0	1
		비율	-	100.0	0.0	100.0
	제2유형	수	-	2	1	3
		비율	-	66.7	33.3	100.0
	제3유형	수	-	1	0	1
		비율	-	100.0	0.0	100.0
	제4유형	수	-	5	0	5
		비율	-	100.0	0.0	100.0
	전 체	수	-	9	1	10
		비율	-	90.0	10.0	100.0
강간(사망)	제2유형	수	2	1	-	3
		비율	66.7	33.3	-	100.0
	전 체	수	2	1	-	3
		비율	66.7	33.3	-	100.0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이 1건 있었으며, 실형(무기징역 포함, 68.2%)이 집행유예(31.8%)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집행유예(64.6%)가 실형(35.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는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이 같았으며, 상해가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는 13세 미만은 90%, 강간은 54.8%로 실형이 높게 나타났지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72.5%)가 높게 나타났다. 사망이 발생한 강간죄의 경우는 모두 실형 이상이 선고되었다.

③ 3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3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강간	제1유형	수	83	33	116
		비율	71.6	28.4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제2유형	수	175	101	276
		비율	63.4	36.6	100.0
	제3유형	수	34	0	34
		비율	100.0	0.0	100.0
	전 체	수	292	134	426
		비율	68.5	31.5	100.0
강제추행	제1유형	수	75	72	147
		비율	51.0	49.0	100.0
	제2유형	수	110	198	308
		비율	35.7	64.3	100.0
	제3유형	수	6	0	6
		비율	100.0	0.0	100.0
전 체	수	191	270	461	
	비율	41.4	58.6	100.0	
13세 미만	제1유형	수	7	11	18
		비율	38.9	61.1	100.0
	제2유형	수	68	96	164
		비율	41.5	58.5	100.0
	제3유형	수	11	0	11
		비율	100.0	0.0	100.0
전 체	수	105	107	212	
	비율	49.5	50.5	100.0	
강간(상해)	제2유형	수	88	108	196
		비율	44.9	55.1	100.0
	제3유형	수	59	8	67
		비율	88.1	11.9	100.0
	전 체	수	147	116	263
		비율	55.9	44.1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18	53	71
		비율	25.4	74.6	100.0
	제2유형	수	6	3	9
		비율	66.7	33.3	100.0
	전 체	수	24	56	80
		비율	30.0	70.0	100.0
13세 미만(상해)	제2유형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제3유형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제4유형	수	5	0	5
		비율	100.0	0.0	100.0
	전 체	수	7	1	8
		비율	87.5	12.5	100.0

강간죄의 경우 실형(68.5%)이 집행유예(31.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집행유예(58.6%)가 실형(41.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상해가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는 13세 미만은 87.5%, 강간은 55.9%로 실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70.0%)가 높게 나타났다.

(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 사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기 때문에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구분하여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동일하다).

①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1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전체사건은 1건으로 강간(상해)-제3유형이며 실형이었다.

② 2차 양형기준(2010. 7. 15. 공개)

2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전체사건은 25건으로 강간(9건), 강제추행(3건), 13세 미만 대상(3건), 강간(상해, 9건), 13세 미만(상해, 1건)이며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③ 3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3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전체사건은 27건으로 강간(8건), 강제추행(5건), 13세 미만 대상(2건), 강간(상해, 12건)이며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가) 일반사건(특강누범 사건 제외)

①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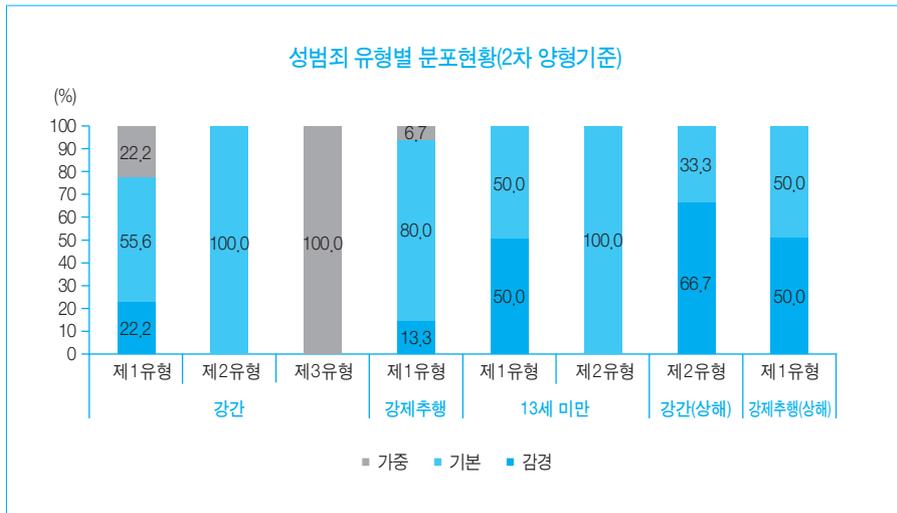
1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유형 및 영역 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강간	제1유형	수	2	5	2	9
		비율	22,2	55,6	22,2	100,0
	제2유형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제3유형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2	6	3	11
		비율	18,2	54,5	27,3	100,0
강제추행	제1유형	수	2	12	1	15
		비율	13,3	80,0	6,7	100,0
	전체	수	2	12	1	15
		비율	13,3	80,0	6,7	100,0
13세 미만	제1유형	수	1	1	-	2
		비율	50,0	50,0	-	100,0
	제2유형	수	0	1	-	1
		비율	0,0	100,0	-	100,0

단위 :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강간(상해)	전체	수	1	2	-	3
		비율	33,3	66,7	-	100,0
	제2유형	수	4	2	-	6
		비율	66,7	33,3	-	100,0
전체	수	4	2	-	6	
	비율	66,7	33,3	-	100,0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1	1	-	2
		비율	50,0	50,0	-	100,0
	전체	수	1	1	-	2
		비율	50,0	50,0	-	100,0



2009. 7. 1. 이후부터 시행된 제1차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간죄 사건의 경우 전체 11건 중에서 제1유형이 9건, 제2유형이 1건, 제3유형이 1건으로 제1유형인 일반강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1유형의 경우 기본영역(5건) > 감경영역(2건), 가중영역(2건)의 순서를 보인 반면, 제2유형은 기본영역(1건)에, 제3유형은 가중영역(1건)에 각 분포하였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전체 15건이 제1유형인 일반강제추행에만 분포하였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의 기본영역(12건) > 감경영역(2건) > 가중영역(1건)의 순서를 보였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 전체 사건 수가 3건에 불과하였으며, 제1유형에 2건, 제2유형에 1건의 분포를 보였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간죄의 경우 6건의 사건 전부가 제2유형에만 분포하였는데, 영역별 분포를 보면 감경영역(4건) > 기본영역(2건)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전체 2건 모두 제1유형에 분포하였으며, 영역별 분포는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에 각 1건씩 분포하였다.

② 2차 양형기준(2010. 7. 15. 공개)

2차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유형 및 영역 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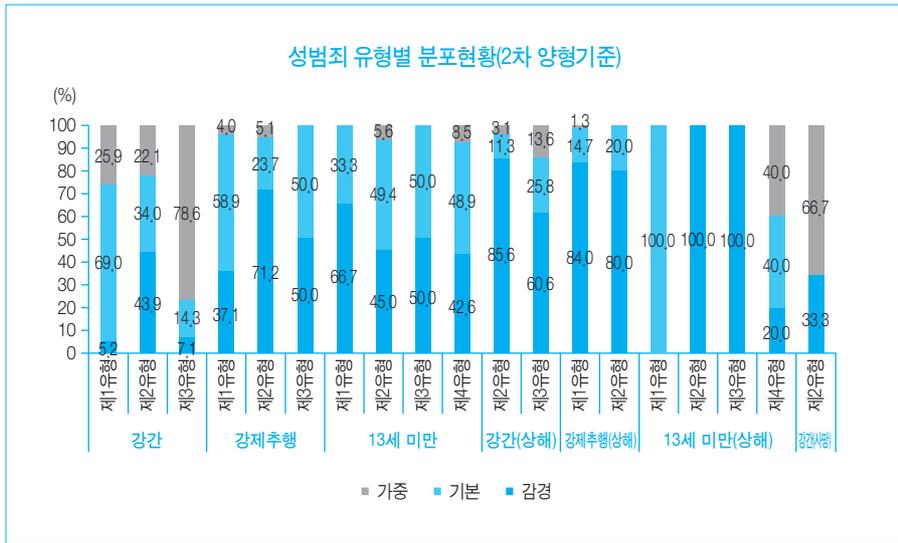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강간	제1유형	수	3	40	15	58	
		비율	5.2	69.0	25.9	100.0	
	제2유형	수	107	83	54	244	
		비율	43.9	34.0	22.1	100.0	
	제3유형	수	2	4	22	28	
		비율	7.1	14.3	78.6	100.0	
	전 체	수	112	127	91	330	
		비율	33.9	38.5	27.6	100.0	
	강제추행	제1유형	수	56	89	6	151
			비율	37.1	58.9	4.0	100.0
제2유형		수	183	61	13	257	
		비율	71.2	23.7	5.1	100.0	
제3유형		수	2	2	0	4	
		비율	50.0	50.0	0.0	100.0	
전 체		수	241	152	19	412	
		비율	58.5	36.9	4.6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13세 미만	제1유형	수	10	5	0	15
		비율	66.7	33.3	0.0	100.0
	제2유형	수	72	79	9	160
		비율	45.0	49.4	5.6	100.0
	제3유형	수	5	5	0	10
		비율	50.0	50.0	0.0	100.0
	제4유형	수	20	23	4	47
		비율	42.6	48.9	8.5	100.0
	전 체	수	107	112	13	232
		비율	46.1	48.3	5.6	100.0
강간(상해)	제2유형	수	167	22	6	195
		비율	85.6	11.3	3.1	100.0
	제3유형	수	40	17	9	66
		비율	60.6	25.8	13.6	100.0
	전 체	수	207	39	15	261
		비율	79.3	14.9	5.7	100.0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63	11	1	75
		비율	84.0	14.7	1.3	100.0
	제2유형	수	4	1	0	5
		비율	80.0	20.0	0.0	100.0
	전 체	수	67	12	1	80
		비율	83.8	15.0	1.3	100.0
13세 미만(상해)	제1유형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제2유형	수	3	0	0	3
		비율	100.0	0.0	0.0	100.0
	제3유형	수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제4유형	수	1	2	2	5
		비율	20.0	40.0	40.0	100.0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전 체	전 체	수	5	3	2	10
		비율	50,0	30,0	20,0	100,0
강간(사망)	제2유형	수	1	-	2	3
		비율	33,3	-	66,7	100,0
	전 체	수	1	-	2	3
		비율	33,3	-	66,7	100,0



먼저 강간죄의 경우, 전체 330건 중에서 제1유형이 58건, 제2유형이 244건, 제3유형이 28건으로 제2유형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의 경우 기본영역(40건) > 가중영역(15건) > 감경영역(3건)의 순서를 보였으며, 제2유형의 경우 감경영역(107건) > 기본영역(83건) > 가중영역(54건)의 순서를 보였고, 제3유형의 경우 가중영역(22건) > 기본영역(4건) > 감경영역(2건)의 순서를 보였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전체 412건 중에서 제1유형이 151건, 제2유형이 257건, 제3유형이 4건으로 제2유형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

은 기본영역(89건) > 감경영역(56건) > 가중영역(6건)의 순서를 보였고, 제2유형은 감경영역(183건) > 기본영역(61건) > 가중영역(13건)의 순서를 보였으며, 제3유형은 사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에 각각 2건의 사건이 분포하였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 전체 232건 중에서 제1유형이 15건, 제2유형이 160건, 제3유형이 10건, 제4유형이 47건으로 제2유형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은 감경영역(10건) > 기본영역(5건)의 순서를 보이고, 제2유형은 기본영역(79건) > 감경영역(72건) > 가중영역(9건)의 순서를 보였다. 제3유형은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에 각 5건의 사건이 분포하였으며, 제4유형은 기본영역(23건) > 감경영역(20건) > 가중영역(4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간죄의 경우 전체 261건 중에서 제2유형이 195건, 제3유형이 66건으로 제2유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2유형은 감경영역(167건) > 기본영역(22건) > 가중영역(6건)의 순서를 보였고, 제3유형은 감경영역(40건) > 기본영역(17건) > 가중영역(9건)의 순서를 보였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전체 80건 중에서 제1유형은 75건, 제2유형은 5건으로 대다수의 사건이 제1유형인 일반강제추행에 분포하였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제1유형은 감경영역(63건) > 기본영역(11건) > 가중영역(1건)의 순서를 보였고, 제2유형은 감경영역(4건) > 기본영역(1건)의 순서를 보였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 전체 10건 중에서 제1유형은 1건, 제2유형은 3건, 제3유형은 1건, 제4유형은 5건으로 제4유형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전체 3건이 모두 제2유형에 해당하였다.

③ 3차 양형기준(2011. 4. 15. 공개)

3차 양형기준 해당 사건들의 유형 및 영역 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강간	제1유형	수	5	85	26	116
		비율	4.3	73.3	22.4	100.0

단위 :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제2유형	수	107	120	49	276
		비율	38.8	43.5	17.8	100.0
	제3유형	수	2	4	28	34
		비율	5.9	11.8	82.4	100.0
	전체	수	114	209	103	426
		비율	26.8	49.1	24.2	100.0
강제추행	제1유형	수	63	74	10	147
		비율	42.9	50.3	6.8	100.0
	제2유형	수	216	78	14	308
		비율	70.1	25.3	4.5	100.0
	제3유형	수	4	1	1	6
		비율	66.7	16.7	16.7	100.0
	전체	수	283	153	25	461
		비율	61.4	33.2	5.4	100.0
13세 미만	제1유형	수	10	8	0	18
		비율	55.6	44.4	0.0	100.0
	제2유형	수	74	72	18	164
		비율	45.1	43.9	11.0	100.0
	제3유형	수	3	6	2	11
		비율	27.3	54.5	18.2	100.0
	제4유형	수	7	12	0	19
		비율	36.8	63.2	0.0	100.0
	전체	수	94	98	20	212
		비율	44.3	46.2	9.4	100.0
강간(상해)	제2유형	수	175	13	8	196
		비율	89.3	6.6	4.1	100.0
	제3유형	수	51	10	6	67
		비율	76.1	14.9	9.0	100.0
	전체	수	226	23	14	263
		비율	85.9	8.7	5.3	100.0

단위 :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강제추행(상해)	제1유형	수	59	10	2	71
		비율	83.1	14.1	2.8	100.0
	제2유형	수	5	3	1	9
		비율	55.6	33.3	11.1	100.0
	전체	수	64	13	3	80
		비율	80.0	16.3	3.8	100.0
13세 미만(상해)	제2유형	수	1	1	-	2
		비율	50.0	50.0	-	100.0
	제3유형	수	1	0	-	1
		비율	100.0	0.0	-	100.0
	제4유형	수	3	2	-	5
		비율	60.0	40.0	-	100.0
	전체	수	5	3	-	8
		비율	62.5	37.5	-	100.0

